

www.asiae.co.kr

탄핵안 가결 234:56

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 헌재 심판 전까지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헌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1987년 9차 헌법 개정 이후 최다 득표(1577만3128표·51.6%)로 대통령직에 당선됐다는 명예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촛불집회에 의해 탄핵됐다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규정된 대로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보를 송달한다. 이어 권 위원장은 수령한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접수,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의결서 사본을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의결서 사본을 받는 즉시 군(軍)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전까지 직을 잃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물론 경호와 의전 역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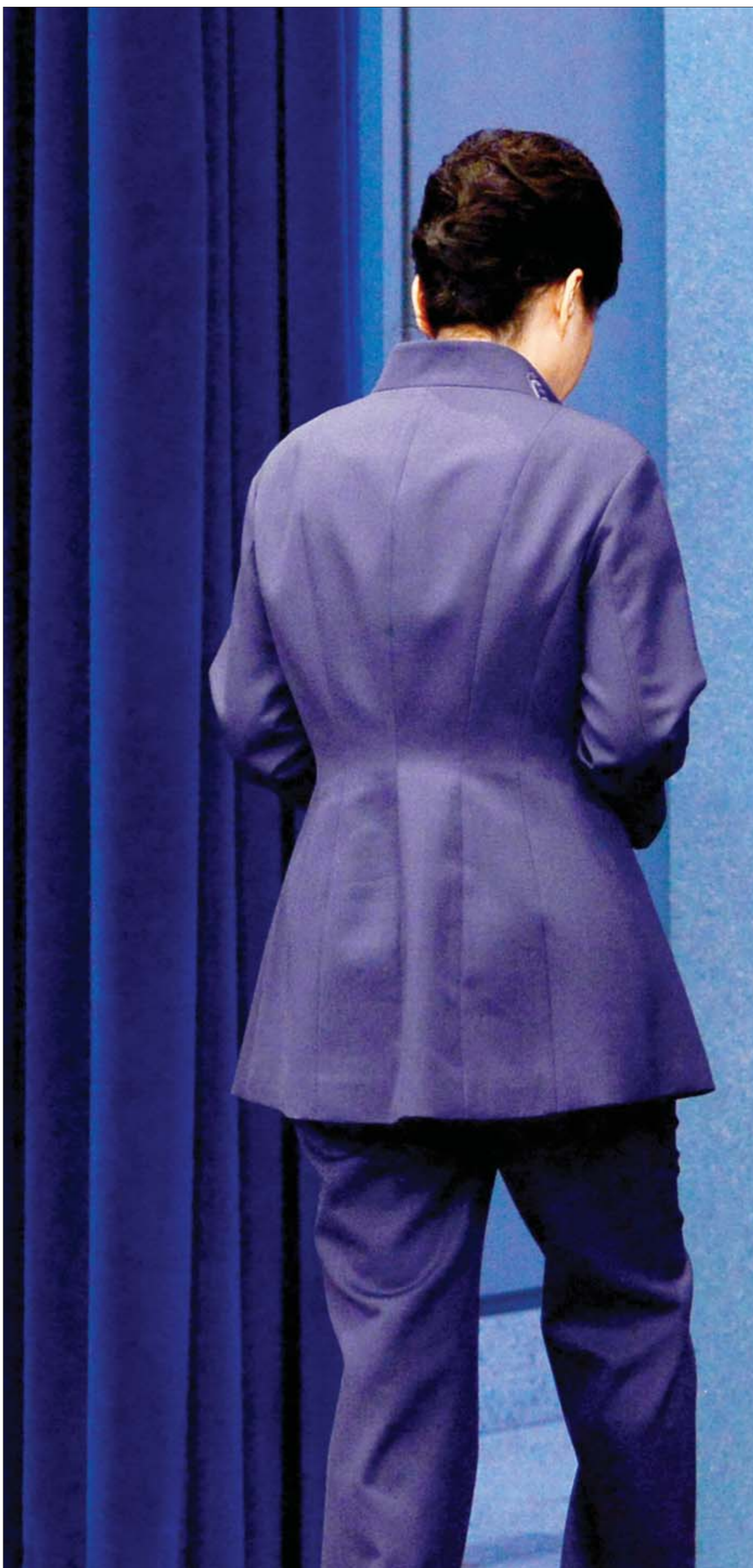
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관례법에 따라 이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

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국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180일 이내'라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헌재의 심판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박 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3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상황이라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정지가 미증유의 사태임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심리를 무작정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3일 만에 탄핵안을 기각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차, 5시 국무위원 긴급 소집

청와대 "결과 겸허히 수용"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지만 청와대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관저에서 TV를 통해 표결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안을 받기 직전인 오후 5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에 동참하면서 이미 가결을 예상한 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탄핵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통화에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가결이) 예상됐던 만큼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한광옥 비서실

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도 표결 전 참모진에게 "시나리오 별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모진은 TV를 통해 국회 표결과정을 지켜보며 가결 직후에도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탄핵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 결정으로 박 대통령 직위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정지의 근거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된 헌법 65조3항이다.

또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경부조직법 12조)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맡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며 조약 체결·비준, 외교 사절 임명·접수·파견,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영전 수여권, 국외 출석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업무보고 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비상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공식보고는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 총리에게 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수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당시 수석비서관들은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에게 공식보고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도 별도 보고했다. 황 총리도 이를 참고해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가장 6개월 동안 '관저 집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가장 내년 6월6일까지다.

최일권 기자 igcho@